

제3기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 설정공고

본 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본 회사 정관 제18조에 의거하여 본 회사의 제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를 정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설정하고,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함을 공고합니다.

2019년 12월 13일

현대중공업지주 주식회사
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순환로3길 50
대표이사 권 오 갑

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은행장 허인